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20 문팔갑의원외 3

나. 회부일자 : 2000. 4. 20

다. 상정일자 : 2000. 5. 1

(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

나. 개정이유

-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(대통령령 제16691호, 2000. 1. 8)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자급 단가를 인상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,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함(별표 2)
-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제8조(별표1, 별표2)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 기준과 국외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,
-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,

-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라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락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락”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.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『별표1』 중 "속박료"를 "속박비"로 한다.

『별표1』와 『별표2』 하단 비고란 "3"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『별표2』 중 일비(1일당)란 및 속박비(1야당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일비(1일당)	속박비(1야당)
의장·부의장	가등급 35	가등급 151
	나등급 35	나등급 109
	다등급 35	다등급 84
	라등급 35	라등급 72
의 원	가등급 30	가등급 132
	나등급 30	나등급 86
	다등급 30	다등급 64
	라등급 30	라등급 56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조 (회기수당 지급) ① 회기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, 회기중 의회회의 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<u>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 (회기수당 지급)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, 회기중 의회회의 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<삭제></p> <p>② (생략)</p>